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26
----------	------

2024년 3월 5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 박영한 의원(찬성자 32명)
- 나. 제 안 일 : 2024년 2월 1일
- 다. 회 부 일 : 2024년 2월 7일
- 라. 상 정 일 :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4년 3월 5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영한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및 용어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조례 목적 개정(안 제1조)
- 도심부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신설)
-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신설)
-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분야별 계획 중 녹지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조 제2항제3호)
-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현행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변경된 조례의 제명에 따라 조례 본문의 용어를 ‘역사도심’에서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며, 조례의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 제2조),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안 제5조)을 재정비하는 한편,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시장의 책무(안 제4조) 등 신설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의 변경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나, 유의미한 개정사항이 있는 조항(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및 신설 조항(안 제3조, 제4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 〉

조 항	개정 내용
제 명	· 조례의 제명 변경
제1조	· 조례의 목적 개정 및 용어의 변경
제2조	· 용어의 정의 개정 및 용어의 변경
제3조	·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신설
제4조	· 시장의 책무 신설
제5조	· 서울도심 기본계획 주요 내용 개정 및 용어의 변경
제6조~제8조	· 용어의 변경

나. 검토 내용

“조례의 제명”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자치법규의 제명은 해당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고유한 이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볼 때 제명의 변경은 곧 자치법규의 정체성 변경을 나타낸다 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제명이 ▲ 자치법규 규율 내용 전체를 대표하는지, ▲ 규율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현행 조례에서 명시한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이하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역사도심의 범역 확정 등) 및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별지 도면에서 규정한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붙임 2)으로서 해

당 구역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이하,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이하, ‘관련 계획 등’)을 통해 관리되고 있음

- 관련 계획 등에서는 현행 조례의 ‘역사도심’ 범역을 ‘서울도심’이라 지칭하고 있으므로, 조례를 관련 계획 등에 맞게 현행화하지 않을 경우 정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현행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명시된 ‘역사도심’을 관련 계획 등의 용어인 ‘서울도심’으로 변경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 생각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조례의 목적(안 제1조)을 ‘서울도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관리’로 명시하고 있고,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 조항(안 제4조)을 신설하였음을 고려할 때, 변경된 제명인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조례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목적(안 제1조)”

- 현행 조례의 목적은 ‘서울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에서는 그 목적을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 변경하고자 함

- 이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역사도심의 범역 확정 등)에 따라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이하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이 역사문화 복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에서 체계적인 도시정비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며, 관련 계획 등에서도 달라진 ‘서울 도심’에 대한 관리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 '23.1.5일 확정 공고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명칭을 바꾸고, 첨단과 전통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조성하여 도심의 활력과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음. 그 일환으로 중심지 체계의 3도심 중 ‘서울도심’을 국제문화교류중심지로 육성하고 도심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도시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인센티브 적용과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하였음
- 서울시는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서울도심’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되어온 사항을 재정비하여 도심 정비와 업무·상업기능 강화, 도심 녹지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는 도심 관리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안하였으므로, 관련 계획 등에서 ‘서울도심’의 관

리 방향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에 근거하여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관련 계획 등의 확정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관련 계획 등이 지난 '23.2월에 확정 공고 완료¹⁾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시는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진 '서울 도심'의 관리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전문가 평가 >



출처 : 「서울도심 기본계획」

“정의(안 제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에서는 관련 계획 등에서 지칭하는 바에 따라 기존의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1) '23.01.05.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공고
'23.02.09.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 공고
'23.02.1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고시

용어를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신설하여 “도심부”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도심권의 도심부 발전방향과 정비기본계획을 제시하였고,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서울도심’ 도심부 부문별 기본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며,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는 ‘서울도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심의 활동이 집중된 상업지역을 도심부 범역(붙임2)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심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도심부”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u></p> <p><신 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u>"서울도심"----- ----- -----.</u></p> <p>2. <u>"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u></p> <p>3. (현행 2호와 같음)</p>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3조)”

- 현행 조례에서는 다른 법령·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에 따

라 ‘서울도심’ 지역과 관련하여 현행 조례의 우선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는 다른 법령·조례 등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도심’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다른 규제보다 우선 적용하는 것이 조례의 제정목적과 정책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현행	개정안
<신설>	<u>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시장의 책무(안 제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것으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고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시장의 책무’ 조항의 신설은 시장이 담당해야 할 책무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도심’의 정비·관리 사업과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담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각항 각호의 용어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며,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별 계획에 ‘녹지’를 추가하는 한편, 안 제5조제3항제2호의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 ①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의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1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서울시는 2015년 수립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서울도심’을 관리해왔으나, ‘서울도심’의 생활권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해당 지구단위 계획 수립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획인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고 '23.2.9일 확정 공고한 바 있음
 - 현행 조례에 따라 시장은 ‘서울도심’과 관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바,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명칭과 실제 「기본계

획」의 명칭을 통일하여 상호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마땅함. 다만, 서울시는 「기본계획」의 명칭 변경에 앞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현행 조례 개정을 우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② 녹지 분야별 계획의 추가(안 제5조제2항제3호)

- 안 제5조제2항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의 분야별 계획 중 하나로 ‘녹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도시기본계획」에서 공간계획의 하나로 도심녹지 회복과 생활권 공원·녹지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는 공원·녹지·수변축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고,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녹지공간 확보와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도 주요정책과제로 ‘녹지생태도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녹지생태도심’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녹지’ 계획을 추가하도록 조례에서 명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녹지’ 계획을 포함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확정된 이후에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절차에 맞지 않으므로, 서울시는 계획 수립·확정과 함께 조례 개정을 병행했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됨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방향 〉

고밀·복합개발과 녹지공간을 동시 확보하는 민간재개발 추진



- 공 원 녹 지 : 블럭별 1개소 이상, 공원과 공원을 보행로 연결
- 건물저층부 : 오픈스페이스 집적화 저층부 개방 공간 확대

- 건폐율은 낮추고 높이는 더 높게
- 주거·상업·문화·업무 복합화

녹지생태 네트워크 구축

용·복합 개발 실현



출처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발표자료

③ 관련법 개정에 따른 연계 계획의 변경(안 제5조제3항제2호)

- 안 제5조제3항은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 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연계 계획을 명시한 것으로, 현행 조례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이하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이하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 현행 조례에서 명시한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제정(2015.12.23. 시행)됨에 따라, 이를 「주거기본법」의 위임조례인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 생각함
- 다만,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 기본 조례」가 개정(2016.3.24. 시행)²⁾ 되면서 제4조 주거종합계획이 신설되고, 「주택 조례」 개정(2016.3.24. 시행)³⁾에 따라 제5조 주택종합계획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관련 법령 개정사항에 따른 자치법규 현행화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뜻하므로, 서울시는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거기본법」 [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8호, 2015. 6. 22., 제정]

◇ **제정 이유**

(전략) 이에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방향인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하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권,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지원센터,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등에 관한 조문을 보완하여 이 법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개정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시행(2015.12.23)됨에 따라 이에 앞서 시행(2012.12.31.)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개정이유 : 관계법령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라. 주택종합계획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현행	개정안
<p>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역사도심</u>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u>역사도심 기본계획</u>(이하 '<u>역사도심 기본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한다.</p> <p>② 제1항의 <u>역사도심 기본계획</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역사도심</u> 변화 분석 및 진단 2. <u>역사도심</u>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u>환경</u> 등 분야별 계획 4. ~ 7. (생략)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른 <u>주택종합계획</u> 3. ~ 5. (생략) <p>④ 시장은 제1항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p>	<p>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 <u>서울도심</u>의----- 「서울특별시 <u>서울도심 기본계획</u>(이하 '<u>서울도심 기본계획</u>' 이라 한다)」-----.</p> <p>② ---- <u>서울도심</u> -----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서울도심</u> ----- 2. <u>서울도심</u> ----- 3. ----- <u>환경, 녹지</u> ----- 4. ~ 7. (현행과 같음) <p>③ ----- -----, <u>서울도심</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u>주거종합계획</u> 3 ~ 5. (현행과 같음) <p>④ ----- <u>서울도심</u> ----- ----- -----.</p> <p>⑤ ----- -- <u>서울도심</u> ----- ----- -----.</p>

현 행	개 정 안
<p>⑥ 시장은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⑥ ----- <u>서울도심</u> ----- ----- ----- -----.</p>
<p>⑦ 시장은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p>	<p>⑦ ----- <u>서울도심</u> ----- ----- ----- -----.</p>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과 본문의 용어를 ‘서울도심’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련 계획 등(「도시기본계획」, 「도시정비기본계획」,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서울도심’의 정책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조례의 목적)에서 ‘서울도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관리’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안 제4조(시장의 책무)에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의 제명은 조례의 전체 내용을 대표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것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서울도심’의 관리 방향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심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역사문화 복원을 위한 도시 재생’에서 ‘도시 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 정비·관리’로 조례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2호는 ‘도심부’를 정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도심부 발전방향과 정비기본계획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도심의 활동이 집중된 상업지역을 도심부 범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도심부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도심부에 대한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에서는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서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이는 ‘서울도심’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서울도심’의 정비·관리 사업과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담보하였음
- 이번 일부조례개정안 제5조제1항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계획」의 명칭과 실제 「기본계획」의 명칭을 통일하여 관련 사업 및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상호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2항제3호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야별 계획의 하나로 ‘녹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계획 등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이미 주요정책과제로 ‘녹지생태도심’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와 관련 계획 등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녹지생태도심’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해야 하는 연계 계획의 하나로 종전의 ‘「주택 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을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는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제정(2015.12.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나,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제4조 주거종합계획 신설, 2016.3.24. 시행)⁴⁾과 「주택 조례」 개정(제5조 주택종합계획 삭제, 2016.3.24. 시행)⁵⁾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추후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서울도심’의 달라진 관리 방향을 반영하여 현행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서울도심’ 관련 정책의 추진 근거는 현행 조례에 있으므로, 서울시는

4) 개정이유 : 주거정책 관련 법체계의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이 시행(2015.12.23)됨에 따라 이에 앞서 시행(2012.12.31.)중에 있는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 상위법이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5) 개정이유 : 관계법령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라. 주택종합계획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포함한 관련 계획 등의 확정에 앞서 조례 개정 추진을 우선했어야 한다고 생각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요지 : 없음.

9. 기타필요한사항 : 없음.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u></p>	<p style="text-align: center;"><u>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 한양도성 역사도심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u>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p> <p><신 설></p> <p>2.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서울도심"----- ----- -----.</p> <p>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p> <p>3. (현행 2호와 같음)</p>
<p><신 설></p>	<p>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u>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p>
<p><신 설></p>	<p>제4조(시장의 책무) <u>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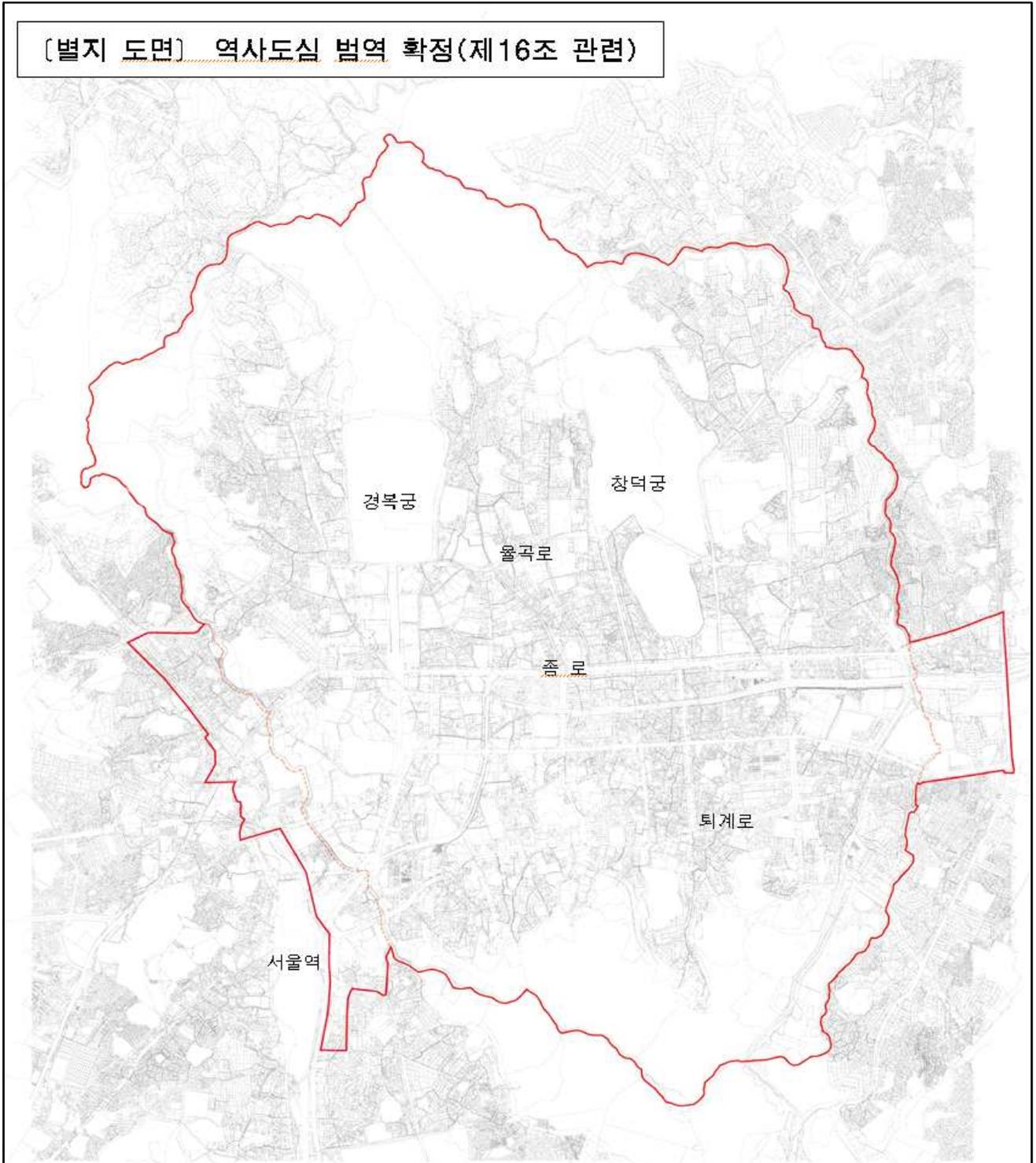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u>역사도심</u>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u>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역사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u>」을 수립한다.</p> <p>② 제1항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u>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u>과 부합하여야 한다.</p> <p>1. <u>역사도심</u> 변화 분석 및 진단</p> <p>2. <u>역사도심</u> 관리의 기본 방향</p> <p>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u>환경</u> 등 분야별 계획</p> <p>4. ~ 7. (생략)</p> <p>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서울특별시 주택조례</u>」 제5조에 따른 <u>주택종합계획</u></p> <p>3. ~ 5. (생략)</p> <p>④ 시장은 제1항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제1항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p>	<p>제5조(<u>서울도심</u>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 <u>서울도심</u>의----- 「<u>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 이라 한다)</u>」-----.</p> <p>② ---- <u>서울도심</u> ----- ----- ----- -----.</p> <p>1. <u>서울도심</u> ----- 2. <u>서울도심</u> ----- 3. ----- <u>환경, 녹지</u> -----</p> <p>4. ~ 7. (현행과 같음)</p> <p>③ -----, <u>서울도심</u>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u>」 제4조에 따른 <u>주거종합계획</u></p> <p>3 ~ 5. (현행과 같음)</p> <p>④ ----- <u>서울도심</u> ----- ----- -.</p> <p>⑤ ----- <u>서울도심</u> ----- ----- -----.</p>

현행	개정안
<p>⑥ 시장은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을 들을 수 있다.</p> <p>⑦ 시장은 <u>역사도심</u>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p>	<p>⑥ ----- <u>서울도심</u> ----- ----- ----- -----.</p> <p>⑦ ----- <u>서울도심</u> ----- ----- ----- -----.</p>
<p>제4조(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u>역사도심</u>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p> <p>1. (생략)</p> <p>2. <u>역사도심</u>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p> <p>3. · 4. (생략)</p>	<p>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u>서울도심</u>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서울도심</u>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5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의 <u>역사도심</u> 기본계획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p>	<p>제7조(시책 반영) ----- <u>서울도심</u> ----- -----.</p>
<p>제6조(재원의 확보) <u>역사도심</u>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p>	<p>제8조(재원의 확보) <u>서울도심</u> ----- ----- -----.</p>

□ 역사도심(서울도심) 범역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역사도심의 범역 확정 등)에 따라 한양도성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별지 도면에서 정한 구역

[별지 도면] 역사도심 범역 확정(제16조 관련)



□ 도심부 범위

- 「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서울시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의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목적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3. 작성자

-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 담당관 오희선
-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 추계분석관 김지혜 (02-2180-7953)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한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526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2월 01일

발 의 자: 박영한,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영철, 김용일,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상혁, 박 석, 박성연,
박중화, 박춘선, 소영철,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종복, 이민석, 이병운,
이봉준, 이새날, 이은림,
이종배, 이효원, 장태용,
최호정, 허 훈, 황철규
의원(33명)

1. 제안이유

- 서울 도심의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이에 서울 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 연관 계획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명칭 및 용어 개정(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나. 조례 목적 개정(안 제1조)
- 다. 도심부를 정의 함(안 제2조제2호 신설)
- 라.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함(안 제3조 신설)

- 마. 서울특별시장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 지원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신설)
- 바.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분야별 계획 중 녹지를 포함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2항제3호)
- 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서울도심”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도심부”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중전의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서울도심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서울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서울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녹지 등 분야별 계획
4. 공간관리계획
5. 지역별 관리 지침
6. 집행 계획
7.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3.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그 밖의 각 분야별 주요사업의 기본계획
- ④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⑤ 시장은 제1항의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 ⑥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시장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6조(중전의 제4조)의 제목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을 “(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중 “역사도심”을 각각 “서울도심”으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5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제8조(중전의 제6조)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서울도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한옥 등 건축자산, 옛길, 옛 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정한 지역

제3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 및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해당 구역 안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나. 정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른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라. 서울도심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서울도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서울도심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소단위 및 보전 정비형의 건폐율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84조제1항의 범위안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제1항제7호부터 제 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13항 중 “역사도심내”를 “서울도심내”로 하며, 같은 조 제17항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 7. 중심상업지역 : 1천퍼센트(단, 서울도심 : 800퍼센트)
-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단, 서울도심 : 600퍼센트)
-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 10. 유통상업지역 : 600퍼센트(단, 서울도심 : 500퍼센트)

제68조의2제4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역사도심”을 “서울도심”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지원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서울도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한양도성 역 사도심의 역사문화 복원 및 건축경관 의 형성을 위하여 도시재생 기준·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도심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확보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양도성 역사도심"(이하 "역사도심" "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 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서 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u>서울도심</u> "----- ----- ----- ----- ----- -----
<u><신 설></u> 2. (생 략) <u><신 설></u>	2. " <u>도심부</u> "라 함은 4대문안 범역인 퇴계로·다산로·왕산로·율곡로·사직 로·통일로를 경계로 하여 그 주변지 역을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서울도심 기본계획에서 정한 범역을 말한다. 3. (현행 2호와 같음)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도심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은 서 울도심의 정비·관리사업을 지원하여 야 하며, 서울도심의 경쟁력 확보 정 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역사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도심의 보전·관리·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역사도심 기본계획(이하 '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여야 한다.

1. 역사도심 변화 분석 및 진단
2. 역사도심 관리의 기본 방향
3. 역사, 보행, 주거, 산업, 환경 등 분야별 계획
4. ~ 7. (생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생략)

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3. ~ 5.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에 따라 권역을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의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할 경우에 공청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서울도심 기본계획의 수립)

① -----
-- 서울도심의-----
-- 「서울특별시 서울도심 기본계획(이하 '서울도심 기본계획'이라 한다)」-----
-----.

② ----- 서울도심 -----

-----.

1. 서울도심 -----
2. 서울도심 -----
3. ----- 환경, 녹지 -----

4. ~ 7. (현행과 같음)

③ -----

-----, 서울도심 -----
-----.

1.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 3 ~ 5. (현행과 같음)

④ ----- 서울도심 -----

-----.

⑤ ----- 서울도심 -----

-----.

⑥ ----- 서울도심 -----

-----.

⑦ 시장은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한 경우 서울특별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일간신문 및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고한다.

제4조(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략)
2. 역사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중·저층 건축물 위주의 소단위형 정비사업
3. 4. (생략)

제5조(시책 반영)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시 제4조의 역사도심 기본계획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재원의 확보) 역사도심 기본계획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일반회계 이외에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 서울도심 -----

-----.

제6조(서울도심 기본계획사업) 서울도심

-----.

1. (현행과 같음)
2. 서울도심 -----

3. 4. (현행과 같음)

제7조(시책 반영) -----
----- 서울도심 -----
-----.

제8조(재원의 확보) 서울도심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명칭, 목적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대하여 서울도심 기본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안 제5조제3항제2호)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계분석관 김지혜

☎ 02-2180-7953

e-mail : kjh0123@seoul.go.kr